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26 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:서삼석·송갑석·이개호

허 영・임오경・전용기

주철현・황 희・박 정

박상혁 · 신영대 · 이상직

신정훈 • 윤영덕 • 윤후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최근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,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 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.

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영토이며, 문화·관광 ·환경·해양·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.

이에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,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.

주요내용

- 가. "도서(島嶼)"를 "섬"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, 제명을 「섬 발전 촉진법」으로 함.
- 나.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연륙기간을 20년으로 함(제2조).
- 다. 관리대상 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 및 제15조).
- 라.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마. 지정섬의 개발사업 관리 및 관리섬에 대한 지원 관리 등을 위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신설).
- 바.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정책수립·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(안 제17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도서개발"을 "섬 발전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도서(島嶼)의"를 "섬의"로, "도서지역"을 "섬지역"으로 한다.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"도서"란"을 "'섬"이란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"를 "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"으로, "개발대상도서로서"를 "개발대상 섬으로서"로, "도서는 예외로 한다"를 "섬은 개발대상 섬으로 본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"개발대상 섬"이란 사람이 거주(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는 섬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하다.
- 1. 제주특별자치도 본도(本島)
- 2.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난 섬
- ④ "관리대상 섬"이란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한 생활여건을 충

족시키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섬으로 제2항의 개발대상 섬을 제외한 섬을 말한다.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제4조의 제목 "(개발대상도서의 지정)"을 "(개발대상 섬 및 관리대상섬의 지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개발이"를 "개발 또는 관리가"로, "도서를 개발대상도서(이하 "지정도서"라 한다)로"를 "섬을 개발대상 섬(이하 "지정섬"이라 한다) 또는 관리대상 섬(이하 "관리섬"이라 한다)으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지정도서는"을 "지정섬 및 관리섬은"으로, "도서개발심의위원회(이하 "도서개발심의위원회"라 한다)"로 한다)"를 "섬발전심의위원회(이하 "섬발전심의위원회"라 한다)"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지정도서의"를 "지정섬 및 관리섬의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도서를"을 "섬을"로, "다음 각 호의 사항을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개발도서"를 "개발섬"으로 한다.

이 경우 지정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지정도서를"을 "지정섬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"를 "섬발전심의위원회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"도서지역의"를 "섬지역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도

서지역"을 "섬지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"도서개발을"을 "섬개 발을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"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"를 "섬발전심의위원회의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지정도서의"를 "지정섬의"로 한다.

제12조 중 "도서"를 "섬"으로, "지정도서"를 "지정섬"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"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"를 "섬발전심의위원회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"을 "섬발전심의위원회를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도서의"를 "섬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"을 "섬발전심의위원회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·청장 및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"를 "섬발전심의위원회의"로 한다.
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·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2.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관리섬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적절한 생활여건 충족을 위하여 관리섬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

강구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(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섬의 개발 사업 관리 및 관리섬에 대한 지원 관리 등을 위하여 종합정보체계 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(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) ① 국가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정책수립·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진흥원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7조의2(정관)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, 지부,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
 - 4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
- 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7.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
- 8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9. 공고의 방법
- 10.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・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7조의3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섬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· 연구
 - 2.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
 - 3.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
 - 4. 섬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, 섬 관광 활성화, 섬의 생태·문화 ·역사·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 연구
 - 5.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
 - 6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한 위탁사업

- 7.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7조의4(임원 및 직원)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제17조의5(임원의 결격사유)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 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- 제17조의6(자금의 조달) 진흥원은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 - 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 - 2.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
 - 3. 기부금
 - 4. 그 밖의 수입금
- 제17조의7(국유재산의 사용 등) 국가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제17조의8(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)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

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제17조의9(지도·감독)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을 지도·감독한다.
 - 1. 제17조의3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
 - 2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- 제17조의10(비밀유지의 의무)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7조의11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진흥원이 아닌 자는 섬발전연구진흥 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17조의12(「민법」의 준용)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진흥원의 설립준비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설립위원회(이하 "설립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③ 설립 당시 진흥원의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⑤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혂 행 개 아 도서개발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도서(島嶼) 제1조(목적) ------섬의-----의 생산・소득 및 생활기반시 설의 정비·확충으로 생활환경 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 ----섬지역------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란 만조(滿潮) 시에 바다로 둘 러싸인 지역을 말한다. <u>다만,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삭제> 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<삭 제> 1. 제주특별자치도 본도(本島) 2.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 | <삭 제> 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"개발대상 섬"이란 사람이 <신 설> 거주(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 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하는 섬 중 개발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말한 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

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 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 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.

<신 설>

제4조(개발대상도서의 지정) ① 제4조(개발대상 섬 및 관리대상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(이하 다.

하나에	해당하는	지역은	제외
한다.			

- 1. 제주특별자치도 본도(本島)
- 2.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 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난 섬
-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-대상 <u>섬으로서</u>---------섬은 개발대상 섬으로 본 다.
 - ④ "관리대상 섬"이란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한 생활여 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리 가 필요한 섬으로 제2항의 개 발대상 섬을 제외한 섬을 말한 다.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하다.

섬의 지정) ① ----------개발 또는 관리가-----"지정도서"라 한다)로 지정한 섬을 개발대상 섬(이하 "지정 섬"이라 한다) 또는 관리대상 ②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도서개 발심의위원회(이하 "도서개발 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.

제5조(<u>지정도서의</u> 고시) 행정안전 저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<u>도서를</u> 지정하였을 때에는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고시하여야 한다. <<u>수단 신설></u>

- 1. (생략)
- 2. <u>개발도서</u> 및 개발사업의 범 위
- 3. 4. (생략)

제6조(사업계획의 수립) ① <u>지정</u> 지<u>정</u> 지<u>도서를</u>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섬(이하 "관리섬"이라 한다)으로			
② 지정섬 및 관리섬은			
-섬발전심의위원회(이하 "섬발			
전심의위원회"라 한다)			
·.			
제5조(<u>지정섬 및 관리섬의</u> 고시)			
<u>섬을</u> <u>대</u>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		
이 경우 지정			
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			
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			
<u>다.</u>			
1. (현행과 같음)			
2. 개발섬			
3. • 4. (현행과 같음)			
제6조(사업계획의 수립) ① <u>지정</u>			
<u>섬을</u>			

라	사업계획을	작성하여	행	정
안전]부장관에게	제출하여여) ‡	한
다.				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<u>도서개발</u>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 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 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도서지역의 교통·통신의 편 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 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 의 개선·확충에 관한 사항
- 4. 5. (생략)
- 6. <u>도서지역</u>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- 7. · 8. (생략)
- 9. 그 밖에 <u>도서개발을</u>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사업계획의 확정) ① 제6조 저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 부장관이 <u>도서개발심의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

② <u>섬발전심</u> 의위원회의
 3
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섬지역의</u>
7. · 8. (현행과 같음) 9 <u>섬개발을</u>
세7조(사업계획의 확정) ① <u>섬발전심의위원회의</u>

보고하고 확정한다.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 ② (생략)

제9조(사업의 시행자) ① <u>지정도</u> <u>서의</u> 사업시행자는 국가, 지방 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(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 (水面)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도서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<u>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</u>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둔다.

·
<u> </u>
 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
한 조치)
- <u>섬</u>
<u> 지정섬</u>
제14조(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)
①서 바
<u>섬발</u> 전심의위원회를

- 1. 제4조에 따른 도서의 지정 2. ~ 4. (생략)
- ②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위원 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다.
- ③ (생략)
-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차관·청장 및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⑤ (생략)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개발심 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원회의-----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 설>

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다음 각 호의-----
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・ 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
- 2.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 이 위촉하는 사람
- ⑤ (현행과 같음)

-----섬발전심의위

제15조(관리섬에 대한 지원)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적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절한 생활여건 충족을 위하여 관리섬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)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섬의
개발사업 관리 및 관리섬에 대한 지원 관리 등을 위하여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・운영할 수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)
① 국가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
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정책수
립·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
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
다)을 설립한다.

-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진흥원의 설립과 등기에 필

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2(정관) ① 진흥원의 정

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, 지부,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
- 4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 항
- 7.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 항
- 8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9. 공고의 방법
- 10. 규약·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·변 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7조의3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섬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이

 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

<신 설>

2.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

- 3.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
- 4. 섬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, 섬 관광 활성화, 섬의 생태·문화·역사·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
- 5.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· 협력
- 6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위탁사업
- 7.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도서개발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7조의4(임원 및 직원) 진흥원 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 제17조의5(임원의 결격사유)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제17조의6(자금의 조달) 진흥원은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
- 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출연금 또는 보조금
- 2.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 는 수익금
- 3. 기부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17조의7(국유재산의 사용 등)
국가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
제17조의8(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)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

	야 한다. 승인받은 사업운영계
	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
	에도 또한 같다.
<u><신 설></u>	제17조의9(지도・감독) 행정안전
	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
	대하여 진흥원을 지도·감독한
	다
	<u>1. 제17조의3에 따른 사업의 적</u>
	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
	2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
	<u>는 사항</u>
<u><신 설></u>	제17조의10(비밀유지의 의무) 진
	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
	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
	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
	<u>여서는 아니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17조의11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	진흥원이 아닌 자는 섬발전연
	구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
	<u>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17조의12(「민법」의 준용) 진
	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
	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
	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
	한다.